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377호 2013. 7. 5 (금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07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
○ 하동군 조례 제2008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	4
○ 하동군 조례 제2009호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 ...	5
○ 하동군 조례 제2010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
○ 하동군 조례 제2011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4
○ 하동군 조례 제2012호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6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3-2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3차) .....	27
--------------------	-----------------------	----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448호	하동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	29
○ 하동군 공고 제2013-462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	30
○ 하동군 공고 제2013-47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 하동군 공고 제2013-47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9
○ 하동군 공고 제2013-47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4
○ 하동군 공고 제2013-47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규칙 공고 .....	74

<b>회 람</b>									
----------------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2 ) 제 377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5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7호

###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 중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 4 ) 제 377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8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5조 제목과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  
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9호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 동 군 공 보

( 6 ) 제 377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5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0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  
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 동 군 공 보

### ( 8 ) 제 377 호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산림재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10 ) 제 377 호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제4조 관련)

○○○○○○○○○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  
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축(20 . . .~20 . . .)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 12 ) 제 377 호

[ 별지 제2호서식 ]

○○○○년 ○○월 ○○일

제○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10조 관련)

○○○○년 제○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보고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년 제○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안건번호	소 재 지			지정대 상면적 (㎡)	심 의 결 과				비고
	읍·면	리	지번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심의 보류	부결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가결 : ○○건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 원안가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 조건부가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377 호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결서

(제13조 관련)

년 제○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심의번호	심의안건	의결사항
제○○○○-○○호	○○읍·면 ○○리 ○○번지(지목 : ) ○,○○○㎡	

※ 의결사항은 원안가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 (서명)  
 부위원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별지 제4호서식]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제13조 관련)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 (1) 소 재 지 : ○○읍·면 ○○리 산○○번지(지목 : )
- (2) 지정 면적 : ○○○㎡
- (3) 피해 유형 : 산사태·토석류
- (4) 위험 등급 : I, II, III, IV등급
- (5)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심 의 항 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377 호

[별지 제5호서식]

심 의 번 호	제 〇〇〇〇 - 〇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제〇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하동군 〇〇읍면 〇〇리 산〇〇번지 등 〇〇개소)

---

제 안 자	하 동 군 수
제출년월일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심의번호	심의안건	의결주문
제○○○○-○○호	○○읍·면 ○○리 ○○번지(지목 : ) ○,○○○㎡	원안가결
계	○○건, ○○필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가결

3. 심의 대상지

(1) 소 재 지 : ○○읍·면 ○○리 산○○번지(지목 : )

(2) 지정 면적 : ○○○㎡

(3) 피해 유형 : 산사태·토석류

(4) 위험 등급 : I, II, III, IV등급

(5)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6)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붙임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끝.

###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 속	직	성명	연락처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    경도(    °    '    ")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 ~ 5미만	인가5 ~ 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 ~ 20	20 ~ 30	30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 ~ 13	14 ~ 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 ~ 500	500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 경사(°)	5 미만	5 ~ 7	8 ~ 10	11 ~ 16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탐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대피장소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377 호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위 치 도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사 진

하 동 군 공 보

( 21 ) 제 377 호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 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 경도( ° ' " )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 ~5미만	인가5 ~ 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점 수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 수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탄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 )ha			대피장소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377 호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위 치 도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사 진

##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	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	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이하

하 동 군 공 보

( 24 ) 제 377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1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노후 계량기와 급수 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교체계량기 대금은 고지서에 포함한다.

제20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5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2호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3 - 29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3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6. 28.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00-3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28 ) 제 377 호

###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21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우길 30-58	20070618	원우의 뒷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26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05-1	20070618	신흥이라는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8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78-11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31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03-95	20070618	신흥이라는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168-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776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867-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98	20070618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3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냉정길 24-8	20080402	문암과 냉정을 합성하여 문암냉정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2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31-49	20080402	양구라는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75-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24	20080402	횡천강을 끼고 있다하여 횡천강변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974-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267-46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537-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40-71	2009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3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391	20090702	하동군 옥종면과 진주시 수곡면을 잇는 도로로 "옥종"과 "수곡"의 첫자를 혼용하여 도로명으로 사용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9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00-3	20090710	19번 국도의 일부로서, 섬진강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 지역명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49-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	20110621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여 조상의 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하동군 공고 제2013 - 호

#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7조(공인등록) 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 공인등록을  
동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개시일 : 2013. 6. 20
2.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사유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통보를  
위한 기본 자료
3. 전자이미지공인 내역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전자이미지 공인	양곡관리 특별회계하동군 분임수입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2013년 6월 20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공고 제2013-462호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6. 26

### 하 동 군 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획 목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획 기간 : 2013. 06. 27 ~ 2013. 08. 26
- 허가 내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내	김재돌	총렵 (자력)	2013. 06. 27 ~ 2013. 08. 26	허가기간 내 비둘기, 까치 각 50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하동군 공고 제2013-471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3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제안 이유 :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확충

[시·군·구 안전조직 시행 지침(안전행정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사항(2012.10.22.) 반영

3. 주요 골자 :

○ 안전총괄부서(담당)의 명칭 변경, 사회안전 기능 보장(안 제3조)

- 재난관리과(민방위재난담당)를 안전총괄과(안전관리담당)로 개편

-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기동대 업무에 안전관리 총괄 기능 추가

○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 직위 부여(안 제5조, 제6조)

-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 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확충  
[시·군·구 안전조직 시행 지침(안전행정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사항(2012.10.22.) 반영

## 2. 주요내용

- 안전총괄부서(담당)의 명칭 변경, 사회안전 기능 보장(안 제3조)
  - 재난관리과(민방위재난담당)를 안전총괄과(안전관리담당)로 개편
  -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기동대 업무에 안전관리 총괄 기능 추가
-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 직위 부여(안 제5조, 제6조)
  -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규정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1)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안전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가목 중 “민방위, 재난관리”를 안전·재난관리, 민방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복구지원담당주사”를 “안전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②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난관리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한다.

④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 34 ) 제 377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u>재난관리과</u>,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를 둔다.</p> <p>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u>11. 재난관리과</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기동대에 관한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하천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12. ~ 13. 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u>안전총괄과</u>,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를 둔다.</p> <p>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u>11. 안전총괄과</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안전·재난관리, 민방위 및 120기동대에 관한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하천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12. ~ 13. 생략</p>
<p>제5조(소장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u>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u></p> <p>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u>보건진료원</u>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조(소장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u>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u></p> <p>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u>보건진료소장</u>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② <u>보건진료원</u>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② <u>보건진료소장</u>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관련법령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 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정 2012.10.22>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하 동 군 공 보

( 36 ) 제 377 호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병(傷病)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分娩介助)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38 ) 제 377 호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2012.6.29>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이나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 하 동 군 공 보

### ( 40 ) 제 377 호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1. 실·국·본부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 2.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 3.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시달)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여지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41 ) 제 377 호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 I. 추진배경

- ◆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
- ◆ 정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
  - 이를 지방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 뒷받침 필요

- 현재, 시·도는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 식품·청소년 안전 등 사회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5.6 지침 시달)
  - 시·군·구도 시·도별 개편방향에 맞추어 안전조직 개편 필요
- 그간 시·군·구 안전·재난관리는 주로 건설부서에서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복구중심으로 담당
  - 중앙-시도-시군구 및 내부 부서 간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체계 개편 추진

< 시·군·구별 재난담당부서 현황 >

(’13년 1월 기준, 단위 개)

구분	건설부서	행정국 등	전담계 미설치
계(227)	213(94%)	11(5%)	3(1%)
시(74)	68(92%)	3	3
군(84)	84(100%)	-	-
구(69)	61(88%)	8	-

## II. 개편방안

### 1. 기본방향

-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
- 시·도 안전총괄조직과 연계하여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되, 지역 여건과 특수성 고려
- 인력은 전환 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증원 최소화

### 2. 안전총괄부서 설치방안

#### 1) 기 능

-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민방위·비상대비, 안전상황관리, 특사경 등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

기존 기능	신규·강화 기능	안전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계획</li> <li>• 안전교육·홍보</li> <li>• 안전수준 진단·분석</li> <li>• 안전통계 수립·관리</li> <li>• 지역재난대책본부</li> <li>• 재난대응·훈련 계획</li> <li>• 재난상황관리</li> <li>• 재난 예경보체계</li> <li>• 민방위</li> <li>• 비상대비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정책 총괄·조정</li> <li>• 안전문화운동, 안전 공동체 육성</li> <li>• 안전지수, 안전지도</li> <li>• 재난정책 총괄·조정</li> <li>•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li> <li>• 재난현장지휘소 운영</li> <li>• 산단, 원전 등 특수 안전(필요한 지역)</li> <li>• 특사경 등 사회안전 등</li> </ul>
	=	<p>&lt;안전총괄·안전문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정책 총괄·조정</li> <li>•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li> </ul> <p>&lt;안전·재난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수준 진단·분석</li> <li>• 안전지수, 안전지도</li> <li>• 재난총괄, 매뉴얼 관리</li> <li>• 재난대응·훈련계획 등</li> <li>• 지대본, 현장지휘소 등</li> </ul> <p>&lt;사회안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경 지원 등</li> </ul> <p>&lt;비상대비·민방위&gt;</p> <p>&lt;안전상황관리&gt;</p>

※ 자연재난,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은 기존부서에 존치 원칙 / 세부 기능 조정 등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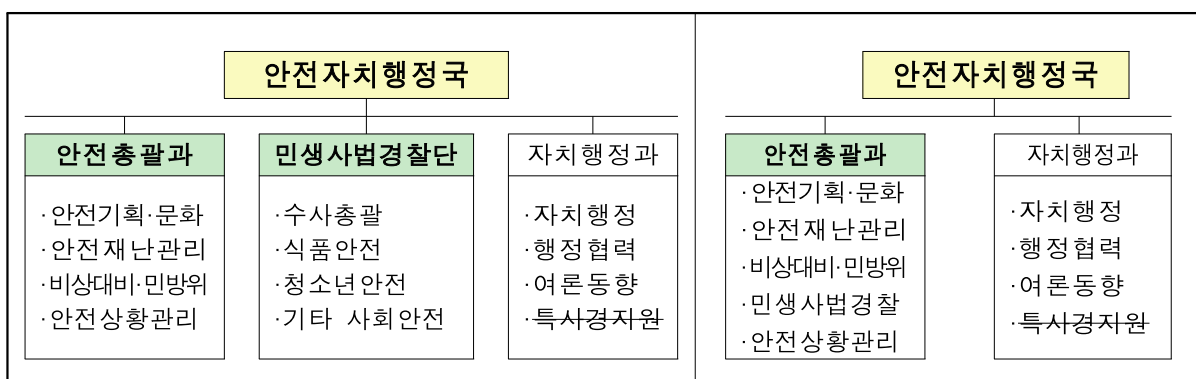
( 44 ) 제 377 호

## 2) 기 구

- 자치행정국·과 등 국·과 단위에서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 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팀 등 설치

※ 구체적인 조직개편은 개편모형(참고1)을 참고하되, 해당 시·도의 안전조직개편 방안과 연계되도록 함

< 참고 : 시·도 안전총괄조직 기본모형 >



- 안전전담기구(국·과)의 명칭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

## 3) 인 력

- 기능 이관은 정원 이체, 신규 기능에 대해 최대 3명 이내 보강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 증원은 최소화

< 인력보강 범위 예시 >

### ▶ 지역특성, 인구, 특수안전수요(외국인, 특정대상시설, 유독물질 등) 고려

- 시·군 : 최대 3명

- 인구 10만~50만 1명, 50만 이상 2명을 보강
- 특수안전수요가 있는 지역은 1명을 별도 보강

- 자치구 : 최대 1명

- 인구 30만 이상 지역에 한해 특수안전수요를 고려하여 1명 보강

\* 특·광역시 본청 중심으로 안전총괄기능, 특사경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

※ 지역 특수안전수요에 따른 인력보강 내역은 별도 통보 예정

###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1. 추진일정

- 정규 조직개편 이전 조치사항
  - 안전총괄 담당 국·과 지정 또는 전담TF 구성 : 5.31(금)까지
- 자치법규 개정 등 추진
  - 제1차 정례회(6월 또는 7월)까지 기구정원조례개정 완료, 지방의회 사전설명, 입법예고 단축 등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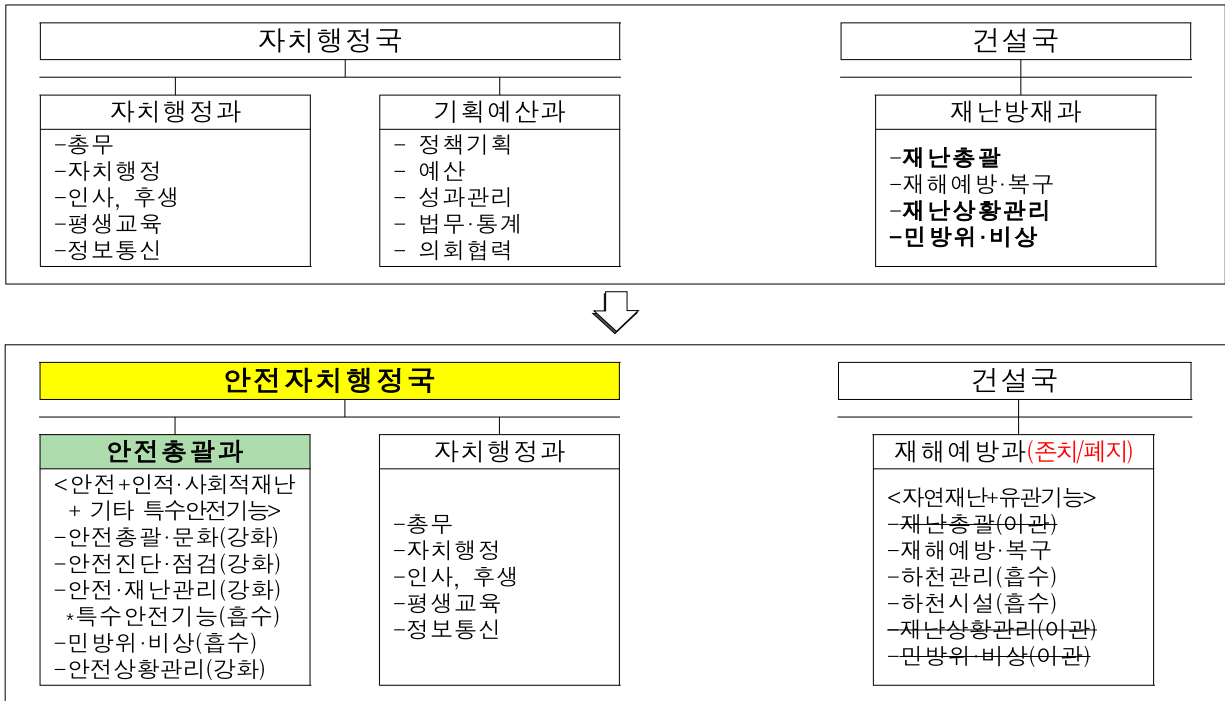
#### 2. 행정사항

- (시·도) 관할 시·군·구의 안전조직 개편을 적극 지도·지원
  -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 전달회의 실시 : 5.24(금)까지
    - \* 해당 시·도의 안전조직개편방안 등을 포함하여 자체 지침 마련·시달
  - 관할 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 지정 및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안행부로 제출 : 5.31(금)까지
- (시·군·구) 부서 간 기능 이관·조정, 인사이동 등에 따라 직렬간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안전총괄부서에 전문성이 있는 우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 시책 적극 활용
- (안전행정부) 안전분야 인력증원분을 '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
  - 인구 기준에 따른 증원분은 동 지침으로 확정하고, 특수수요에 따른 증원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 통보 예정
    - \* 동 지침에 따라 '14년 총액인건비 반영규모 이내에서 안전분야 인력을 증원함에 따라 '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정원 책정 및 인건비를 편성·집행하는 경우는 '13년 총액인건비의 예외적 증원 인력으로 간주하여 페널티 등이 없도록 조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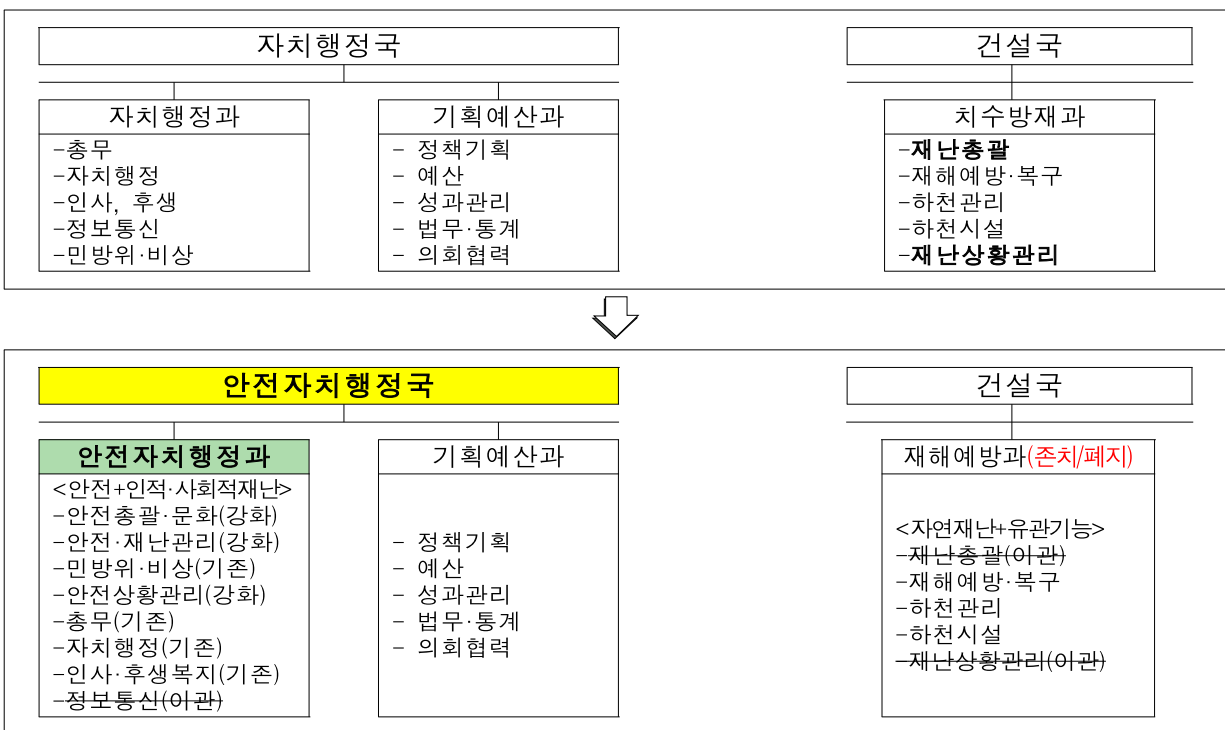
**참고 1**

**시·군·구 안전관리조직 개편 모형(예시)**

**① 유형** 안전총괄부서 설치, 재해예방부서 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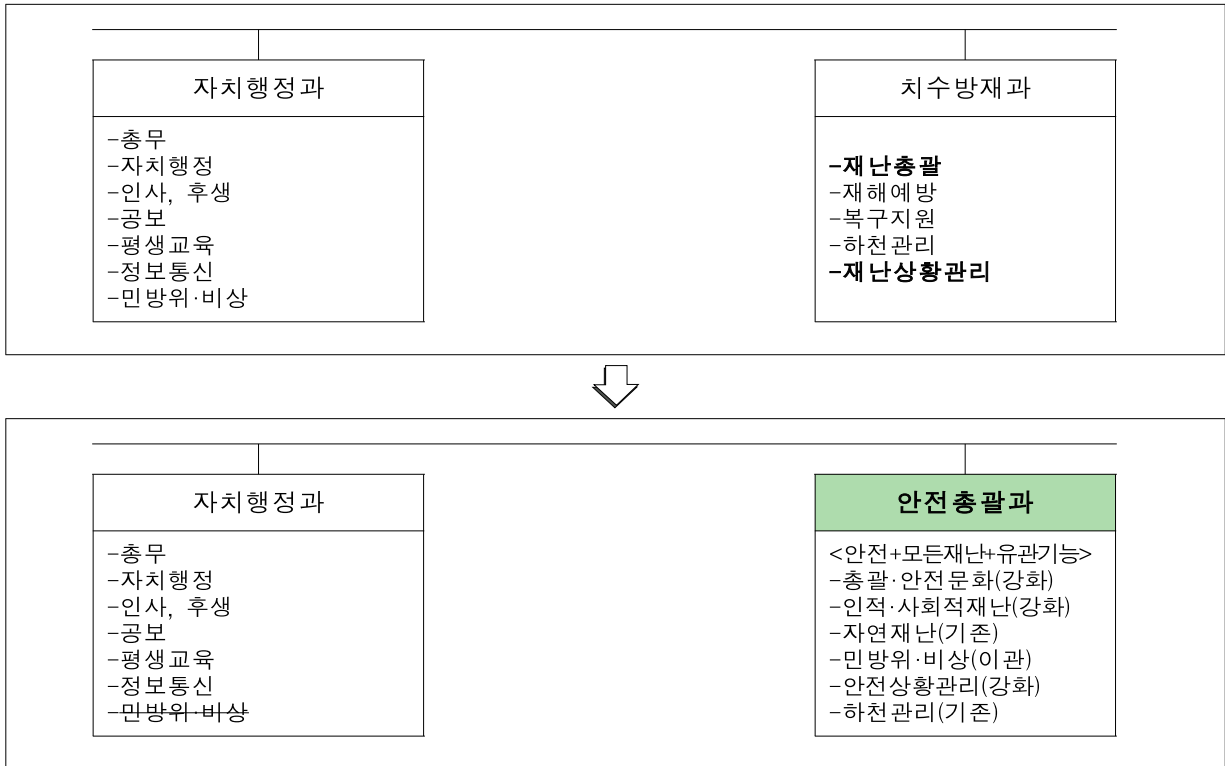


**② 유형** 자치행정과 등을 안전자치행정과로 확대개편



\* 국이 미설치된 지역은 국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 가능

**③ 유형**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



**참고 2**

**시·군·구 안전관리총괄부서 주요 기능(예시)**

<p>기존업무 (이체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강화)</li> <li>▪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강화)</li> <li>▪ 재난 유형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li> <li>▪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 취약분야 현장점검, 개선사항 발굴</li> <li>▪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점검 및 평가</li> <li>▪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등 종합계획 수립·운영</li> <li>▪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li> <li>▪ 재난안전 전문교육 및 홍보(강화)</li> <li>▪ 재난 유형별 자체 실제훈련 계획 수립·운영(강화)</li> <li>▪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과제 처리 및 활성화 지원</li> <li>▪ 재난안전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li> </ul>
<p>신규 및 강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li> <li>▪ 지역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li> <li>▪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li> <li>▪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재난법 개정중)</li> <li>▪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개 행동매뉴얼(자연재난 3, 인적재난 9, 사회적재난 12)</li> </ul> </li> <li>▪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li> <li>▪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li> <li>▪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li> <li>▪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li> </ul>



하동군 공고 제2013-473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 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확충 [시·군·구 안전조직 시행 지침(안전행정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사항(2012.10.22.) 반영
3. 주요 골자 :
  - 안전총괄부서장의 명칭 변경, 사회안전 기능 보강(안 제3조)
    -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
  - 안전총괄부서장의 사무분장에 사회안전 기능 보강(안 제4조)
    -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특사경 지원 등), CCTV통합관제운영 기능
  -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 직위 부여(안 제5조)
    -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 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 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확충 [시·군·구 안전조직 시행 지침(안전행정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사항(2012.10.22.) 반영

## 2. 주요내용

- 안전총괄부서장의 명칭 변경, 사회안전 기능 보강(안 제3조)
  -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
- 안전총괄부서장의 사무분장에 사회안전 기능 보강(안 제4조)
  -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특사경 지원 등), CCTV통합관제운영 기능
-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 직위 부여(안 제5조)
  -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규정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1)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재난관리과장”를 “안전총괄과장”로 한다.

제5조제3항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재난관리과장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52 ) 제 377 호

[별표 1]

하동군 본청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가 <b>안전·재난관리, 민방위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b>
	1 <b>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b>
	2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3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
	4 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
	5 예비군육성 지원
	6 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7 <b>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b>
	8 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9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나 <b>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b>	
<b>안전총괄 과장</b>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7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사업시행
	8 방재의 날 행사 및 방재 도상훈련
	9 재해 사전대비 업무
	10 풍수해 보험 업무
다 <b>하천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b>	
1 하천 정비·유지관리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장의 직급) ----- -----, <u>재난관리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실·과장의 직급) ----- -----, <u>안전총괄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소장의 직급) ①~② 생략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u>보건진료원</u> 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소장의 직급) ①~② 생략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u>보건진료소장</u> 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1]		[별표1]																																																					
<table border="1"> <thead> <tr> <th>실과명</th> <th colspan="2">분장사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1"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u>재난관리과장</u></td> <td>가</td> <td>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td> </tr> <tr> <td>1</td> <td>통합방위협의회 운영</td> </tr> <tr> <td>2</td> <td>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td> </tr> <tr> <td>3</td> <td>비상대비 업무</td> </tr> <tr> <td>4</td> <td>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td> </tr> <tr> <td>5</td> <td>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td> </tr> <tr> <td>6</td> <td>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td> </tr> <tr> <td>7</td> <td>예비군육성 지원</td> </tr> <tr> <td>8</td> <td>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td> </tr> <tr> <td>9</td> <td>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td> </tr> <tr> <td>10</td> <td>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td> </tr> <tr> <td>11</td> <td>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td> </tr> </tbody> </table>	실과명	분장사무		<u>재난관리과장</u>	가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3	비상대비 업무	4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	5	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	6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7	예비군육성 지원	8	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9	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10	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11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table border="1"> <thead> <tr> <th>실과명</th> <th colspan="2">분장사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u>안전총괄과장</u></td> <td>가</td> <td><u>안전·재난관리</u>, 민방위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td> </tr> <tr> <td>1</td> <td><u>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u></td> </tr> <tr> <td>2</td> <td>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td> </tr> <tr> <td>3</td> <td>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td> </tr> <tr> <td>4</td> <td>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td> </tr> <tr> <td>5</td> <td>예비군육성 지원</td> </tr> <tr> <td>6</td> <td>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td> </tr> <tr> <td>7</td> <td><u>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u></td> </tr> <tr> <td>8</td> <td>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td> </tr> <tr> <td>9</td> <td>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td> </tr> </tbody> </table>	실과명	분장사무		<u>안전총괄과장</u>	가	<u>안전·재난관리</u> , 민방위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1	<u>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u>	2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3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	4	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	5	예비군육성 지원	6	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7	<u>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u>	8	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9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u>재난관리과장</u>	가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3	비상대비 업무																																																					
	4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																																																					
	5	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																																																					
	6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7	예비군육성 지원																																																					
	8	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9	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10	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11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u>안전총괄과장</u>	가	<u>안전·재난관리</u> , 민방위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1	<u>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u>																																																					
	2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3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																																																					
	4	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																																																					
	5	예비군육성 지원																																																					
	6	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7	<u>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u>																																																					
	8	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9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 하 동 군 공 보

( 54 ) 제 377 호

하동군 공고 제2013-474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 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확충
-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복지전달체계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 직급과 직종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직관리

3. 주요 골자 :

- 재난관리과 :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7급 ▽1명
- 문화관광과 :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7급 1명
- 행정과 : 일반직 7급 1명
- 금남면 : 일반직 7급 ▽1명
- 주민복지실 : 일반직 8급 1명, 일반직 7급 1명
- 재 무 과 : 일반직 8급 ▽1명
-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7급 ▽1명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 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하 동 군 공 보

( 56 ) 제 377 호

다. 사회복지인력 순증분 반영(안 제2조의 별표)

- 주민복지실 :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명  
                  일반직 7급 사회복지 1명(24명→26명)
- 재 무 과 : 일반직 8급 행정·전산 ▽1명(25명→24명)
- 농업기술센터 : 일반직 7급 행정·농업 ▽1명(49명→48명)

라. 직렬·직급의 불합리한 보직기준 조정(안 제2조의 별표)

구분	기관	부서	직급	직렬		비고
				현행	조정	
일 반 직	본 청	주민복지실	6급	행정·사회복지	행정·세무·전산	
		남해안개발과	8급	행정	행정·농업	
		문화관광과	6급	행정·시설	행정·세무·시설	
		경제수산과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	
		경제수산과	6급	행정	행정·공업·시설	
		경제수산과	7급	행정·농업	행정·시설	
		도시건축과	8급	행정·시설	농업·녹지	
		도시건축과	9급	행정·시설	환경	
		통상교류과	6급	행정·농업	행정·전산·농업	
		건설교통과	6급	행정·시설	행정·세무·시설	
		건설교통과	8급	행정	행정·세무	
	직속	농업기술센터	6급	행정·농업	행정·세무·농업	
		의회사무과	6급	행정	행정·농업	
	면	악양면	7급	행정·농업	행정·방송통신	
		악양면	9급	행정·사회복지	사회복지	
		적량면	6급	사회복지	행정·세무·농업	
		횡천면	6급	행정·농업	행정·시설	
		금성면	6급	행정·농업·시설	행정·시설·환경	
		양보면	7급	행정·농업	행정·전산·농업	
양보면		7급	행정·농업	행정·농업·녹지		
북천면		9급	행정·사회복지	사회복지		
청암면		7급	행정·농업	행정·환경·시설		
옥종면	6급	행정·세무	행정·녹지			
옥종면	9급	행정·사회복지	사회복지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등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58 ) 제 377 호

[별표]

보좌·보조기관의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15	261(2)	68	48(▽1)	9	23	13	21	172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518	239(2)	66	20(▽1)	9	8	6	16	154 (▽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5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수의·(지도)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 59 ) 제 37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49	76	12	7	2	3	1	5	43	
	행정	14(▽2)	13(▽1)	1				0(▽1)			
	세무	1	1								
	사회복지	0(▽1)								0(▽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행정·세무	12(▽1)	5						1	6(▽1)	
	행정·사회복지	5(▽1)	5(▽1)								
	행정·농업	28(▽1)	9		3(▽1)			1(1)	1	14(▽1)	
	행정·녹지	3(1)								3(1)	
	행정·보건	0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3(▽1)	12(▽2)								1(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농촌지도사	0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5(2)	2		1(1)						2(1)
	행정·세무·시설	3(2)	2(2)						1		
	행정·세무·전산	1(1)	1(1)								
	행정·전산·농업	3(1)	2(1)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1)	2(1)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해양수산·시설	2(▽1)	1(▽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0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하 동 군 공 보

( 60 ) 제 377 호

구 분	직 급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과	읍	면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체 육 시 설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일 반 직	7급 소계		158	72(2)	17	6(▽1)	3	3	2	6	49 (▽1)
	행정		19	12			1		2	1	3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1)	2(1)						1	5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방송통신		0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5)	4		0(▽1)				2	14(▽4)
	행정·시설		15(1)	10(1)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1)								1(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1)	2							1(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1)	2							1(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1)	7							3(▽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2(1)	1							1(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시설		0									
행정·보건·환경		2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농업·보건·환경		0									

하 동 군 공 보

( 61 ) 제 37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29	54	33	1	2		1	3	35
	행정	13(▽1)	9(▽2)					1		2
	세무	1	1							
	사회복지	8(1)	2(1)						1	5
	공업	1			1					
	공업(무대.음향)	0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환경	1	1							
	시설	8(▽1)	4(▽1)							4
	행정·세무	4(1)	4(1)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1)	3(▽1)							
	행정·농업	12(1)	5(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보건	0								
	행정·시설	5(▽1)	4(▽1)				1			
	세무·환경	0								
	전산·방송통신	2(1)	2(1)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1)	3(1)							
	녹지·시설	0								
	행정·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0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환경·시설										
세무·공업·시설										
보건·간호·의료	2		2							

하 동 군 공 보

( 62 ) 제 37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44	22	2	2	1	1	0	1	15
	행정	3	2				1			
	전산									
	사회복지	9(3)	3							6(3)
	환경	2(1)	2(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3)	2						1	2(▽3)
	행정·전산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8(▽1)	7(▽1)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하 동 군 공 보

( 63 ) 제 377 호

구 분	직 급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과	읍	면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체 육 시 설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기 능 직	기능직 계		66	18	2	3	0	15	5	5	18
	6급 소계		7	2					2	2	1
	사무		3						1	1	1
	운전		4	2					1	1	
	7급 소계		23	5	2	1		2	2	3	7
	운전		11	3	2					2	4
	사무		6			1		1	2		2
	전화상담		1								1
	기계		1					1			
	전기		1	1							
	통신		1							1	
	선박항해		1	1							
	8급 소계		19	8		2			1		8
	열관리		1	1							
	선박기관		1	1							
	운전		9	2		1					6
	조무		3	3							
	방호		1			1					
	사무		4	1					1		2
	9급 소계		18	3				13			2
	전화상담										
	기계		3					3			
	열관리·기계										
	운전		3	1							2
	사무										
	조무										
	선박		1	1							
	방호										
	전기		3	1				2			
	전기·통신										
화공		4					4				
보건		4					4				

하 동 군 공 보

( 64 ) 제 37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계	3	1				2		
	5급상당 소계	1					1		
	행정. 별정	1					1		
	6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계			615	259	68	49	9	23	13	21	174	총 계			615	261 (2)	68	48 (▽1)	9	23	13	21	172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518	237	66	21	9	8	6	16	155	일 반 직	일반직 계		518	239 (2)	66	20 (▽1)	9	8	6	16	154 (▽1)			
	4급 소계		1	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행정		3	2							1			
	의무		1		1								의무		1		1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행정·농업		6	1									5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농업													5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2
	행정·농업·녹지		3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수의·(지도)		1			1							행정·농업·수의·(지도)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 수산		1										행정·농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 하 동 군 공 보

( 66 ) 제 377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49	76	12	7	2	3	1	5	42		6급 소계	149	76	12	7	2	3	1	5	43		
	행정	16	14	1				1				행정	14(▽2)	13(▽1)	1				0(▽1)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1								1		사회복지	0(▽1)									0(▽1)	
	농지	1	1									농지	1	1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보건진료	5		5								
	환경	2	2									환경	2	2									
	시설	7	7									시설	7	7									
	행정·세무	13	5							1	7	행정·세무	12(▽1)	5							1	6(▽1)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사회복지	5(▽1)	5(▽1)									
	행정·농업	29	9		4					1	15	행정·농업	28(▽1)	9		3(▽1)			1(1)	1	14(▽1)		
	행정·농지	2	1								2	행정·농지	3(1)									3(1)	
	행정·보건	0										행정·보건	0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4	14									행정·시설	13(▽1)	12(▽2)									1(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농지	3	2		1							농업·농지	3	2		1							
	농업·농촌지도사	0										농업·농촌지도사	0										
	농업·수의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3	2								1	행정·세무·농업	5(2)	2		1(1)							2(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3(2)	2(2)									1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전산	1(1)	1(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농업	3(1)	2(1)									1
	행정·전산·시설	2	1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3	1				1				1	행정·공업·시설	4(1)	2(1)				1					1
	행정·농업·농지	3	1		1						1	행정·농업·농지	3	1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행정·해양수산·시설	2(▽1)	1(▽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0										행정·시설·환경	0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농지·환경	2	1								1	행정·농업·농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 하 동 군 공 보

( 67 ) 제 377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58	70	17	7	3	3	2	6	50	7급 소계		158	<u>72(2)</u>	17	<u>6(▽1)</u>	3	3	2	6	<u>49(▽1)</u>	
	행정		19	12			1		2	1	3	행정		19	12			1		2	1	3	
	세무		2	2								세무		2	2								
	전산		2	2								전산		2	2								
	사회복지		7	1						1	5	사회복지		<u>8(1)</u>	<u>2(1)</u>							1	5
	공업		1	1								공업		1	1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해양수산		3	3							1	4
	시설		15	8				2		1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		2		2							
	보건진료		6		6							보건진료		6		6							
	환경		2	2								환경		2	2								
	방송통신		0									방송통신		0									
	행정·세무		5	3							2	행정·세무		5	3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사회복지		5	4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5	4		1				2	18	행정·농업		<u>20(▽5)</u>	4		<u>0(▽1)</u>				2	<u>14(▽4)</u>	
	행정·시설		14	9			1				4	행정·시설		<u>15(1)</u>	<u>10(1)</u>			1					4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0									행정·방송통신		<u>1(1)</u>									<u>1(1)</u>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		3	1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행정·전산·농업		2	2								행정·전산·농업		<u>3(1)</u>	2								<u>1(1)</u>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녹지		<u>3(1)</u>	2								<u>1(1)</u>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보건		1									
	행정·농업·시설		11	7							4	행정·농업·시설		<u>10(▽1)</u>	7								<u>3(▽1)</u>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u>2(1)</u>	1								<u>1(1)</u>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시설		0									행정·보건·시설		0									
행정·보건·환경		2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보건·간호·의료기술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행정·농업·보건·환경		0									행정·농업·보건·환경		0										

## 하 동 군 공 보

( 68 ) 제 377 호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29	54	33	1	2		1	3	34	8급 소계		129	54	33	1	2		1	3	35		
	행정		14	11					1		1	행정		13(▽1)	9(▽2)					1		2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7	1							1	5	사회복지		8(1)	2(1)							1	5
	공업		1			1							공업		1		1							
	공업(무대.음향)		0										공업(무대.음향)		0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보건		10		10							
	간호		1		1								간호		1		1							
	의료기술		9		9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식품위생		2		2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		8(▽1)	4(▽1)								4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4(1)	4(1)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4	4									행정·전산		3(▽1)	3(▽1)								
	행정·농업		11	4								7	행정·농업		12(1)	5(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보건		0										행정·보건		0									
	행정·시설		6	5			1						행정·시설		5(▽1)	4(▽1)		1						
	세무·환경		0										세무·환경		0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2(1)	2(1)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2	2									농업·녹지		3(1)	3(1)								
	녹지·시설		0										녹지·시설		0									
	행정·보건·간호		4		4								행정·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0										보건·환경		0									
	약무·보건		1		1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환경·시설												행정·환경·시설												
세무·공업·시설												세무·공업·시설												
보건·간호·의료		2		2								보건·간호·의료		2		2								

# 하 동 군 공 보

( 69 ) 제 377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44	22	2	2	1	1	0	1	15	9급 소계		44	22	2	2	1	1	0	1	15			
	행정		3	2				1				행정		3	2				1						
	전산											전산													
	사회복지		6	3							3	사회복지		9(3)	3									6(3)	
	환경		1	1								환경		2(1)	2(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8	2							1	5	행정·사회복지		5(▽3)	2							1	2(▽3)	
	행정·전산												행정·전산												
	행정·농업		4	2								2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9	8			1						행정·시설		8(▽1)	7(▽1)			1						
	농업·녹지		1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 하 동 군 공 보

( 70 ) 제 377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3% 이상	13% 이내	4% 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9% 이내	31% 이내	26% 이내	6% 이상

※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34% 이내	30% 이내	25% 이상

※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1% 이내	89% 이상

※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34% 이내	66% 이상	-	-	-

※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하 동 군 공 보

( 72 ) 제 377 호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농 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15(5)	-						
<b>정무직 계</b>	1	1						
군수	1	1						
<b>일반직 계</b>	518(10)	-						
4급	1	1						
4~5급	3	2			1			
5급·지도관	34(4)	12	2	4(3)	1	2(1)	1	12
6급 이하 계	480(6)	-						
<b>별정직 계</b>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b>연구직 계</b>	2							
연구사	2	-						
<b>지도직 계</b>	25(-3)	-						
지도관	3	-		-				
지도사	25	-						
<b>기능직 계</b>	66(-2)	-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기한	비 고
		직 종	직 급			
계	-	-	-	1	-	-
본청	남해안개발과	일반직	5급	1	2015. 6. 30.	6급 정원 환원

하동군 공고 제2013-476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대치1방조제 개 보수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3년 7월 5일

하동군수

1. 사 업 목 적: 방조제 내측사면 보강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 하여 안정적인 영농 도모
2. 사 업 지 구 명: 대치1방조제 개보수공사
3. 위 치: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일원
4. 사업시행면적: 구역면적 14.2 ha  
수혜면적 9.6 ha
5. 사업개요: 방조제 개보수 L=450m
6. 총 사 업 비: 559백만원
  - 국 고: 391백만원
  - 지 방 비: 168 백만원
7. 사 업 기 간: 2013년 ~ 2014년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대치1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시행인가 신청서

- 사 업 명 : 대치1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시행인가 신청
- 목 적 : 방조제 내측사면 노후 및 유수지 토사 퇴적으로 집중호우시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고 있음에 따라 방조제 내측사면 보강으로 방조제 침하 방지
- 위 치 :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일원
- 사 업 량 : 방조제 개보수 L=450m(내측사면보강 식생블럭쌓기 1,836㎡)
- 총사업비 : 559백만원(국비 391, 도비 84, 군비 84)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시 행 자 : 하동군수
- 사업효과 : 방조제 내측사면 보강으로 농경지(9.6ha) 침수 피해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 도모

하 동 군 공 보

( 76 ) 제 377 호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비 (시행계획)	연 도 별 내 역			비 고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국 비	391,000	70,000	321,000		
지방비	도 비	84,000	15,000	69,000	
	군 비	84,000	15,000	69,000	
합 계	559,000	100,000	459,000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승 인 액	연 도 별 내 역			비 고
		2012년 까지	2013년 계획	2014년 이후	
순 공 사 비	296,850	56,400	240,450		
자 재 대	222,150	20,000	202,150		
소 계	519,000	76,400	442,600		
측량설계비	20,000	20,000	-		
공사감리비	0	-	-		
사업관리비	20,000	3,600	16,400		
소 계	40,000	23,600	16,400		
합 계	559,000	100,000	459,000		

□ 사업시행 위치도

대치1지구 방조제개보수사업 위치도(1/25,000)

